

# 세은 차관자금 용자업무 취급요령

— 편 집 부 —

농협 차관 사무국에서 세계은행 차관자금 용자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용자 자금의 세부적 규정 사항은 아직 미정이나 4월중에 대상지역에 한해 대상자격을 가진 농가를 선정하고자 한다. 만 금리 및 증장기 용자이므로 균조합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안내를 발췌 수록한다. 현재 대상지역은 지역적 특성, 농협조합의 활동상태 등을 고려 등이고 대상자는 부업 및 전업등에 따라 기준이 다르어지고 있다. 대상 신청자는 균조합이나 농협 차관 사무국에 문의 하면 된다.

## 1. 일반규정

### 가. 목적

이 요령은 1972. 9. 29 대한민국정부와 국제개발협회(이하 “협회”)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서(이하 “차관협정”) 및 협회와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간에 체결된 사업협정서(이하 “사업협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대하되는 재정자금(이하 “세은 차관자금”)의 대출 관리 및 회수와 이에 관련되는 보고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동자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재 원

세은 차관자금의 재원은 차관협정 부록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협회에 지급된 개발차관자금에 상당하는 금액
- (2) 정부대출에 의한 금액(1,400,000,000원)
- (3) 본 사업하에서 이루어진 용자금의 상환과 이자 및 기타 부담금으로서 수혜자(차주)로부터 수취된 금액

### 다. 자금의 용도

세은 차관자금은 다음 품목의 개발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개발비를 증장기 용자금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 1) 과수 : 사과, 배, 복숭아, 포도에 한함

2) 양송이

3) 잡업

4) 축산 : 산란계, 육계, 육돈에 한함.

### (1). 자금특정

#### ① 배정방법

중앙회의 분기별 자금계획과 사업대상지역 선정결과(및 필요시 용자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본부에서 시균조합(도지부 및 중앙회 영업부 포함)별 용자대상품목별로 대출한도를 배정하고 해당 도지부 및 용자 사무소에 통보한다.

#### ② 사업대상지역 선정기준

- 가) 적지, 적산주의 원칙에 따른다.
- 나) 대상품목에 대한 관계기관 또는 계통조합의 집중적인 기술 및 경영지도가 용이한 지역
- 다) 생산물의 판매처리가 용이한 지역

## 2. 용자요령

### 1. 용자대상자

가) 선정기준(대상자의 요건)  
세은차관금에 의한 용자대상자는 규정 제5조의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신분 및 거소

(가) 과수, 잡업, 축산

특수조합 또는 이동조합의 농민 조합원일 것. 다만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시균조합의 구역내에 거주해야 한다.

**(2) 경영규모**

|       | 단위 | 경 영 규 모 |     |    | 비 고          |
|-------|----|---------|-----|----|--------------|
|       |    | 기준      | 하한  | 상한 |              |
| 산 란 계 | 수  | 1000    | 500 | —  | 1회전 사육<br>규모 |
| 육 계   | 수  | 1000    | 500 | —  |              |
| 육 돈   | 두  | 15      | 10  | —  |              |

1) 용자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상기표에 지시된 경영규모의 하한 이상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만이 용자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경영규모의 기준은 본 용자사업이 지향하는 표준모형의 대상농가를 제시한 것임.

**(3) 기술수준**

사육경험 1년 이상이거나 이에 따르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경영능력과 의욕**

충분한 사업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농산물의 시장동향과 상품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용자신청한 계획사업을 최소한 사업성과 년도(용자기간이 이를 초과할 때는 용자기간)까지 계속할 의욕이 있을 것.

**(5) 재무능력**

(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정된 투자소요액 중 자기자금 부담액(20% 이상)과 운영자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

(나) 용자신청한 계약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사업 성과년도(용자기간이 이를 초과할 때는 용자기간) 이상을 임차기간으로 해야한다.

(다) 계획사업을 최소한 사업성과 년도(용자기간이 이를 초과할 때는 용자기간)까지 계속할 재력이 있을 것

(라) 적격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

**(6) 농장의 입지**

용자신청한 계획사업을 수행할 농장의 지형, 토질, 수리 방향 등이 기술상 양호하고 그 입지가 노동력조달, 생산자재조달, 주산품의 판로 및 부산물의 판로 또는 이용에 비추어 경영상 적합할 것.

**나. 선정 절차 및 방법**

**(1) 용자안내**

회장의 별도지시에 의하여 농협신문 및 시군

조합, 특수조합, 이동조합과 그 지소 또는 분소의 게시판을 통하여 본 용자사업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공고한다.

**(2) 용자 선정지도**

용자 대상자 알선기관과 용자사무소는 용자를 신청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차용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용자절차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담당한다.

**(3) 용자신청**

(가) 용자사무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용자 신청을 접수한다.

(나) 용자를 신청코자 하는 자는 세은 차관자금 차용금 신청서(서식 1)와 사업계획서(서식2)를 용자사무소에 제출한다. 다만 200,000원 이하의 대출에는 차주의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 2개 품목 이상을 용자신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차용금 신청서에 품목별 소요자금을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

(라) 특수조합과 이동조합이 해당품목의 기술지도와 계통 출하능력을 고려하여 세은 차관자금 용자일괄신청서(서식 3) 및 용자신청서 접수처리부(서식 3 첨부)에 조합원의 차용금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4) 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관 : 대상자는 용자 사무소의 권한과 책임하에 선정한다.

(나) 용자 사무소는 신청기간 중 접수된 모든 신청서를 심사하여 용자대상자의 적격요건을 갖춘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용자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제1기준 : 과수원 또는 상전(桑田)에 대한 제2차년도 추가용자는 신규로 신청된 용자에 우선한다.

2) 제2기준 : 경영규모의 확대(과수원 및 상전 조성(桑田造成), 재배사 및 축사의 건립)를 위한 용자는 기타 투자항목만을 위한 일부 용자보다 우선 지원한다.

다만, 잠실 건립 및 개량잠구 구입은 경영규모 확대로 간주할 수 있다.

3) 제3기준 : 알선기관의 일괄 신청분은 접수 사무소에 직접 신청분 보다 우선 지원한다.

### 3. 용자조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 지원한다. 다만 다른 재원으로 지원된 투자를 재 지원하기 위해서 용자될 수 없다.

#### 가. 용자지원항목

다음 표에 열거된 품목별 투자항목에 한하여

#### <축 산>

| 품목별              | 용자항목                    | 내역                 | 지원규모 |       |       |                  |
|------------------|-------------------------|--------------------|------|-------|-------|------------------|
|                  |                         |                    | 단위   | 기준    | 하한    |                  |
| 4. 1 산란계         | 나. 병아리                  |                    | 수    | 2200  | 1100  | 2000수에<br>10%가산  |
|                  | 다. 건물                   |                    |      |       |       |                  |
|                  | (1) 계사                  | 육추사                | 평    | 10    | 5     |                  |
|                  | (2) 부속사                 | 창고, 계분사, 농구사, 작업실등 | 평    | 80    | 40    |                  |
|                  | 라. 설비 및 기구              |                    | 평    | 5     | 5     |                  |
|                  | (1) 급수시설                | 탱크, 펌프, 우물         | 식    | 1     |       |                  |
| (2) 사육기구 및 내부 시설 | 스토브, 급이기, 급수, 케이지 등     |                    |      |       |       |                  |
| 마. 오차대비          |                         |                    | %    | 15    | 0     |                  |
| 바. 용자액           |                         | 품목별 용자 한도          | 천원   | 1,509 | 500   |                  |
| 4. 2 육 계         | 나. 병아리                  |                    | 수    | 4,080 | 1,000 | 4,000수에<br>2% 가산 |
|                  | 다. 건물                   |                    |      |       |       |                  |
|                  | (1) 계사                  | 육추사                | 평    | 20    |       |                  |
|                  | (2) 부속사                 | 중추사                | 평    | 30    | 30    |                  |
|                  | 라. 설비 및 기구              | 성계사                | 평    | 40    |       |                  |
|                  | (1) 급수시설                | 창고, 계분사, 농구사, 작업실등 | 평    | 5     | 5     |                  |
| (2) 사육기구 및 내부 시설 | 탱크, 펌프, 우물등             | 식                  | 1    |       |       |                  |
| 마. 오차대비          |                         |                    | %    | 15    | 0     |                  |
| 바. 용자액           |                         | 품목별 용자한도           | 천원   | 1,539 | 400   |                  |
| 4. 3 육 돈         | 나. 자돈                   | 생후 50일~60일         | 두    | 50    | 20    |                  |
|                  | 다. 건물                   |                    |      |       |       |                  |
|                  | (1) 돈사                  |                    | 평    | 16    | 6     |                  |
|                  | (2) 부속사                 | 창고, 퇴비사, 농구사, 작업실등 | 평    | 4     | 4     |                  |
|                  | 라. 설비 및 기구              |                    |      |       |       |                  |
|                  | (1) 급수시설                | 탱크, 펌프, 우물등        | 식    | 1     |       |                  |
| (2) 사육기구         | 손수레, 쇠스랑, 삽, 팽이, 먹이 통 등 |                    |      |       |       |                  |
| 마. 오차대비          |                         |                    | %    | 15    | 0     |                  |
| 바. 용자액           |                         | 품목별 용자한도           | 천원   | 228   | 50    |                  |

1. 위 표에 제시된 품목과 항목에 한하여 차관 용자금을 받을 수 있음.

2. 용자액이 각 품목별로 위 표의 "바"항(용자액란에 지시된 "용자 하한" 이상이고 또한 용

자 신청(용자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한 각 투자항목이 이 표의 항목별(가~마항) "지원규모 하한 이상이어야만 투자 소요액의 80% 이내에서 용자를 받을 수 있음.

3. “마”항(오차대비란)에는 투자기간 중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투자비용의 변동에 대비하여 예비비(가+나+다+라의 20% 이내)를 계상할 수 있다.

**나. 용자한도**

(1)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정된 투자소요액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품목별 용자액이 용자대상 품목별 용자하한 이상이고, 각 투자항목의 규모가 용자대상 항목별 지원규모 하한 이상이어야 한다. 한 사람에게 대한 용자액의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장은 필요에 따라 품목별 용자한도(상한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대출형식**

원화표시 증서대출로 하되 원금 균등 반년 할부상환 대출로 한다.

**라. 용자금리**

년 12%로 하되 할부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이 연체되면 본회 소정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마. 용자기간**

(1) 용자기간은 각 품목별로 아래기간 내에 사정하되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품 | 목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용자기간 |
|---|---|------|------|------|
| 사 | 과 | 7년   | 5년   | 12년  |
|   | 배 | 6    | 4    | 10   |
| 복 | 승 | 4    | 4    | 8    |
| 포 | 승 | 4    | 6    | 10   |
| 양 | 도 | 3    | 5    | 8    |
| 양 | 송 | 3    | 5    | 8    |
| 산 | 이 | 3    | 5    | 8    |
| 란 | 잠 | 1    | 4    | 5    |
| 계 | 계 | 1    | 4    | 5    |
| 육 | 계 | 1    | 4    | 5    |
| 육 | 돈 | 1    | 4    | 5    |

**바. 용자금의 지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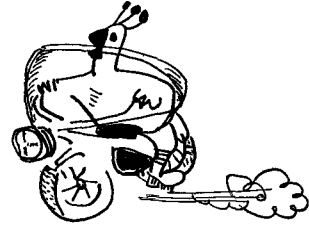
용자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며, 현금은 반드시 차주의 여신 관리자금 계좌에 입금한다.

**사. 상환 방법**

상환기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공휴일인 때는 그 직전의 영업일)로 한다.

**아. 채권보전**

(1)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대출은 차주가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2인 이상을 입보할 경우에 한하여 용자사무소 책임하에 30만원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중기성 대출금의 총합계



가 30만원 이내이고 용자액이 차주의 가치분 소득범위내(신용조사에 의함)이어야 한다.

(2) 차주가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신용대출로 한다.

(3) 과수 또는 잠업농가에 대한 용자에 있어서는 제1차년도 용자액에 제2차년도의 추가예정액의 120%를 가산한 금액을 용자액[1차년 용자액+2차년 용자에정액+(2차년 용자 예정액×20%)]으로 보고 담보를 취할 수 있다.

**4. 업무 취급 요령**

**1. 대출 및 회수 절차**

**가) 차용금 신청**

(1) 서식 : 규정 제94조의 1호(차용금 신청서)와 Ⅱ호(사업계획서, 수지예상표)는 별첨 서식 1 및 2를 사용한다.

(2) 청구 서류 : 용자신청(추가 용자신청포함)이 있으면 전항의 서류(및 이에 부대하는 참고자료)만을 청구하고, 규정 제94조의 기타서류는 필요에 따라 용자 실행전에 청구한다.

(3) 처리 : 규정 제96조에 의하되 일괄 신청분은 용자알선 기관이 제출한 용자신청서 접수처리부(별첨 서식 3-첨부)를 활용한다.

**나) 대출 심사**

**(1) 심사 담당 사무소**

용자 사무소가 담당하되 양송이에 한하여 본부(차관사무국 세은차관사업 전담반)에서 예비심사 후 용자 사무소(중앙회 영업부, 도지부 또는 시군조합)을 지정하여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2)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가심사담당 사무소는 이 요령과 회장이 별도로 시달하는 세은 차관자금 대출심사 기준 및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차용금 신청서 및 기타서류의 검토와 필요한 현지 확인을 거쳐 용자 대

상자의 적격 여부와 계획사업의 기술적, 재무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용자액 및 상환 또는 과수원 조성비에 대한 추가 용자 예정액과 용자조건을 사정한다.

② 일괄 신청분일지라도 차용금 신청건별로 심사한다.

③ 현지 농촌지도소의 기술 지도에 관한 의견과 지역사회개발계획(특히 새마을 지원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한다.

④ 추가용자액은 전년도에 사정한 추가용자 예정액의 120%를 초과하여 사정하지 못한다.

#### 다) 대출 결정

##### (1) 대출 승인 신청

① 규정 제89조에 의한 대출 승인 신청은 별첨 서식 1에 의한다.

② 회장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차관사무국장(세은 차관사업 집행 책임자)참조로 한다.

##### (2) 심사 의견의 반영

대출 또는 대출 승인 신청의 결정에는 심사직원의 심사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심사 의견에서 제시된 용자액을 증액하거나 또는 용자조건을 변경하여 대출할 수 없다.

#### 라) 대출 실행

##### (1) 청구 서류 및 원장정리

한 사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품목을 용자지원(이하 “복수용자”)하는 경우에 대출 실행시의 청구서류 중 차용금 증서는 품목별로 별도 청구하고 대출금 원장도 따로따로 작성한다.

##### (2) 자료비치

용자 실행이 완료되면 대출금원장과 세은 차관자금 품목별 용자 내역표(별첨서식 4)에 그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중앙회 또는 세계은행(협회)측의 요구에 응하여 제시 또는 제출할 참고 자료임.)

#### 마) 대출금의 회수

(1) 용자금의 일부를 기한전에 상환하여 할부금을 변경 조정코자 할 때에는 변경된 할부금 및 이자 상환기일은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2) 용자금의 일부를 기한전에 상환하여 상환기일을 단축코자 할 때에는 최종 할부금으로부터 역순으로 상환 총당한다.

전 2항의 조치에 있어서는 상환 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부할금에 한하여 차주의 희망에 따라 먼저 총당할 수 있다.

#### 바) 대출금의 조건변경

##### (1) 변경 요건

① 규정 제5장 제6절에 의한 대출금의 조건변경은 용자지원된 계획사업이 차주의 노력에 의하여 정상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기한의 연장은 가뭄, 홍수, 바람, 눈, 서리, 해일,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화재(차주 또는 보증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농작물의 현저한 감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차주의 자력(감소로 용자금의 원리금(전액 또는 일부)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③ 기한의 연장은 재해 또는 기타의 연기신청 사유가 발생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연기코자 하는 이자 또는 할부금의 납입 기일 이전에 신청된 것에 한하여 접수한다.

##### (2) 상환 기일 연기 절차

① 용자 원리금의 상환기일 연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책임자가 신청 차주를 직접 면접하고 그 신청 내용은 검토한 후 연기 신청을 접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는 연기신청서(별첨서식 5. 증빙자료 포함, 이하 같다)를 2부 청구하고, 연기신청서 접수처티부(별첨서식 6)에 기입 정리함

② 용자 사무소는 전항의 연기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승인의 경우에는 승인조건과 내용을 신청인(차주)에게 통지(별첨 서식 7) 한다.

③ 진행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차주의 연기신청서와 용자 사무소의 심사서를 각 1부씩 첨부한 용자 조건변경 승인신청서(별첨서식 1을 준용한다)를 본부(차관사무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④ 용자 사무소는 승인분에 대하여는 승인조건과 내용에 따라 차용금 연기 청약서를 청구하여 기한을 연장하며, 불승인분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 조치한다.

⑤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있어서 재해가 일반적이고 심각한 경우에 있어서 상환기일 연가는 따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